

# 예산총칙

202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98,830,000	11,964,900
일반회계	358,780,000	10,763,400
특별회계	40,050,000	1,201,500
기타특별회계	40,050,000	1,201,500
상수도 특별회계	19,178,030	575,341
수질개선 특별회계	13,569,826	407,095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27,922	12,838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2,651,568	79,54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72,960	17,189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645,694	19,371
주차장 특별회계	3,004,000	90,12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05,064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0,400,000천원 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